

1. 개정이유

기존 입법예고 중(“21.9.2-10.13.)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(안) 제26조의2제2항에 오기된 제공기관 지정(변경)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하며, 주간·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신청서 서식을 추가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오기된 제공기관 지정(변경)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(시행규칙 제26조의2)
- 나. 주간·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(별지 제11, 1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4호 서식의 주간활동서비스(방과후활동서비스)”를 “별지 제11호 서식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방과후활동서비스”로 한다.

<신설>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앞쪽)

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① 기관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	
② 대표자 (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③ 법인	법인명	법인등록번호	등록일	
④ 지급계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

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사업실적,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.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정관포함) 사본,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(회칙·규약 등 포함) 사본 중 택 1부 4.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 2. 사업자 등록증	

210mm × 297mm[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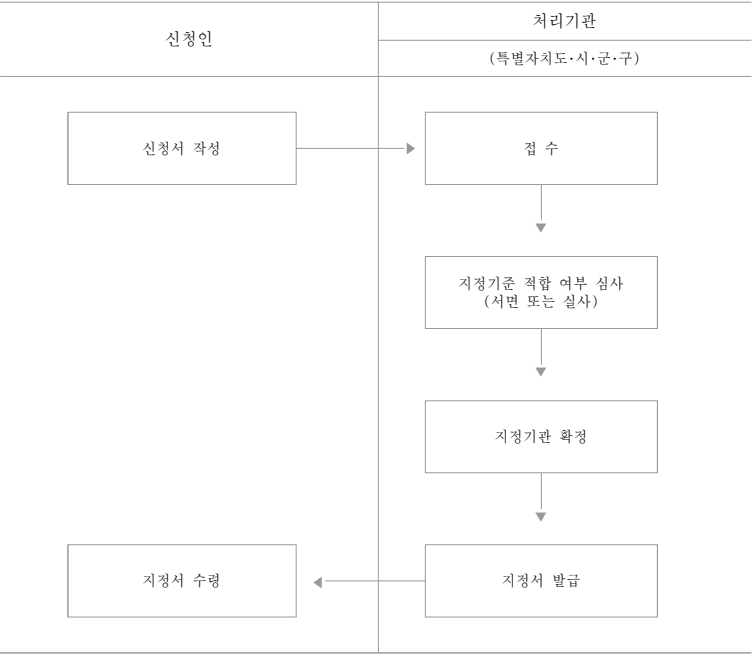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- ② 대표자(신청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.
- ④ 대표자 명의(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)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(앞쪽)

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① 기관	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	
② 대표자 (신청인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③ 법인	법인명	법인등록번호	등록일	
④ 지급계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

위와 같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사업실적,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.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정관포함) 사본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(회칙·규약 등 포함) 사본 중 택 1부 4.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 2. 사업자 등록증	

210mm × 297mm [일반용지60g/m² (제활용품)]

(뒤쪽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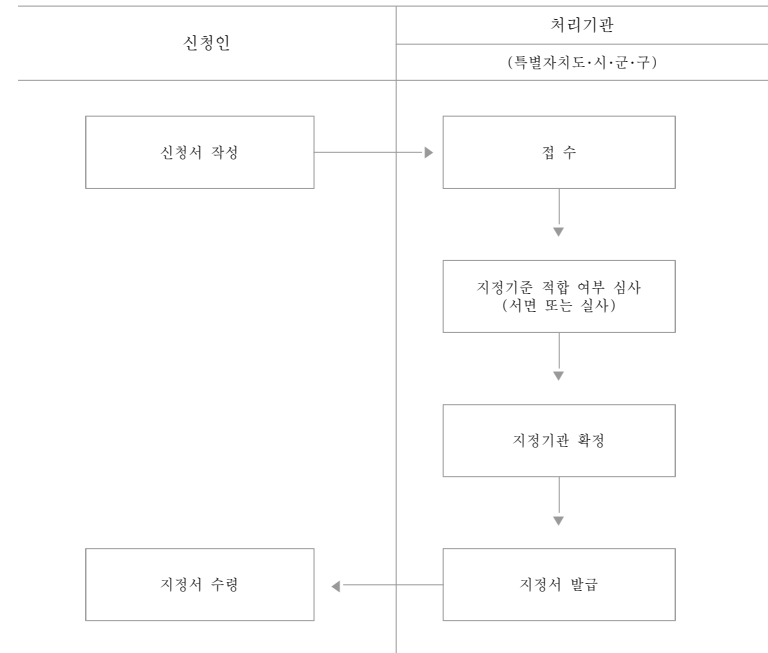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- ② 대표자(신청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.
- ④ 대표자 명의(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)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 (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) ① (생략) ②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<u>별지 제14호 서식의 주간활동서비스(방과후활동서비스) 제공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에</u>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③ ~ ⑥ (생략)	제26조의2 (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1호 서식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방과후활동서비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